

동두천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의 안 번 호	5-355
------------	-------

제출년월일 : 2009. 6.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정이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 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동두천시 기업 SOS(Speed One-stop Solution)지원센터』에 접수된 기업애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 나.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 상시 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 다.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 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 라.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 회의 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 마.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 적극 발굴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 제정조례안 : 덧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등의 책무) 제2항
- :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예산수반상황 : 비예산사업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입법예고기간 : 2008.2.1 ~ 2.21)

□ 부서협의결과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덧붙임

- 경기도 시·군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란 시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둔다.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 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지원단) ① 시장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부시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부시장이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과의 간담회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 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① 시장은 기업애로 발굴·처리상황 종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유관기관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 및 부서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투자유치과
입 안 자	실 · 과장 직위 · 성명	투자유치과장 이 선 재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기업SOS담당 황 철
	담 당 자 성명 · 전화	최 근 화 (860-2281)

경기도 시·군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

('09.04.27현재)

시군명	조례명	공포	비 고
계	20개 시군		
수원시			상반기
성남시	성남시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	'08.08.04	
고양시	고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지지원등에관한조례	'08.10.31	
부천시	부천시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	'08.06.16	
용인시	용인시 기업SOS 지원 조례	'08.05.07	
안산시	안산시 기업SOS 지원 조례	'08.12.03	
안양시			상반기
남양주시			검토중
의정부시	의정부시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	'09.02.19	
평택시			상반기
시흥시			상반기
화성시	화성시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	'08.08.01	
광명시			'08.07.04(부결) 재추진
파주시	파주시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	'08.08.08	
군포시	군포시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	'08.10.27	
광주시	광주시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	'08.05.19	
김포시			검토중
이천시	이천시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	'09.03.30	
구리시			추진중
양주시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08.06.09	
안성시	안성시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	'09.04.09	
포천시	포천시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	'08.05.28	
오산시	오산시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	'08.07.30	
하남시	하남시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	'09.03.19	
의왕시	의왕시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	'08.05.15	
여주군	여주군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	'08.06.17	
동두천시			상반기
양평군	양평군 기업SOS 운영 조례	'08.10.21	
과천시			-
가평군			-
연천군	연천군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	'08.06.25	